

2022년도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상 주 시 의 회 의 장



1. 계획인원: 약간 명 (예산의 범위 내)

2. 명예퇴직신청

가.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21. ~ 1. 27.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비고 1. 해당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2. 인사운영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 명예퇴직신청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수시)명예퇴직 신청 및 심사결정 절차를 이행할수 있음

나. 명예퇴직 신청대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경력직공무원

다. 신청절차

명예퇴직 신청희망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명예퇴직원”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장의 확인을 거쳐 의정팀으로 제출

3. 대상자 심사 · 결정

가.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①상위계급의 공무원, ②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③당해 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④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결정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형벌사실 등 제외사유를 확인한 후 당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

나. 명예퇴직 대상자의 제한

- (1)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 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사람
- (2) 징계의결·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3)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4)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5)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4. 퇴직대상자의 통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의회 사무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5. 퇴직수당 지급

명예퇴직 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퇴직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6. 기타사항

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명예퇴직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나 비위조사 중인 자 등과 같이 명예퇴직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자는 이를 엄격히 심사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하고 본인의 자필 「명예 퇴직원」을 반드시 확인

나. 기타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대통령령)」을 참고하거나, 의회사무국 의정팀(행정☎78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1.12.31.>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 • 제8조에 따름
------	-----	------	---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일반직 [] 특정직()	④ 직급·계급·직무 군(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주민등록번호	⑦ 주소 □□□-□□□
	한자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일
⑪ 비위·형벌 사항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 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선고형:)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임기제 [] 별정직	년 월	확인 인사업무담당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기간)	년 개월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형벌 사항 확인	[] 있음 [] 없음	[] 비위조사 중 [] 수사진행 중 [] 형사재판 계류 중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 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징계처분 요구 중 [] 징계의결 요구 중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 형(刑) 확정(확정일:) 형량:)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 유예 (선고일:) 선고형:)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형량:)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 예 (선고일:) 선고형:)	
확인		인사업무담당 (인)	연금업무담당 (인)	감사업무담당 (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의회사무국장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연금·감사담당자가 적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는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소속기관	→	지급결정 및 통보 의장	→	신청인 통지 소속기관	→	지급 의장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소방·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에 적습니다.
 -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관·연금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이 직접 적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관이 적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하되("√" 표시),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상주시의회 의장 귀하